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면)

시설물 긴급안전점검 공무원증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유효기간	부터	까지
사 진 (3cm×4cm)		
위 사람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85mm × 65mm [백상지 (150g/ m²)]

(뒷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⑦ 생략
제14조(사법경찰관)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